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481
----------	------

제안년월일 : 2025년 2월 24일
발의자 : 도시계획균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임종국 의원이 2023년 8월 7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5)과 유만희 의원이 2025년 2월 3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92)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2025. 2. 24.)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에 어린이놀이시설, 세대공감 놀이공간 등 놀이시설과 한강공원 및 공원이용시설을 명시하여 모든 시민이 놀이시설 및 한강공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도시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하고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에 놀이시설 및 수변공간을 포함(안 제7조제5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주택, 놀이시설, 수변공간(한강공원 및 공원이용시설을 포함한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공간·시설 등에 적용된다.</p> <p>1. ~ 4. (생 략)</p> <p>5.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주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7조(적용범위)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주택, <u>놀이시설, 수변공간(한강공원 및 공원이용시설을 포함한다)</u>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